

안산시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73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5. 11. 18.

제출자 : 안산시장

□ 개정이유

- 반구성의 규모 확대, 통장연임 방법의 명문화, 위촉해제 통·반장의 재위촉 제한, 통·반장의 복지업무 지원 추가, 사기진작 마련 등 현행 안산시 통·반 설치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안산시 통·반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가.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의 정비 (안 제2조, 안 제3조)

- 시책의 원활한 “말단 침투와”를 시책의 원활한 “추진과”로 정비
- 일본식 용어인 “부락”을 “마을”로 정비하는 등 조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

나. 반을 구성하는 세대수 기준 변경 (안 제3조)

- 반을 구성하는 세대수를 50가구에서 100세대로 확대하여 반구성을 보다 규모화 함으로써 반장 수를 축소하고자 함

다. 통장 연임시 재위촉 방법 명시 (안 제5조)

- 통장 연임시 통장활동평가를 반영하여 동장이 공개모집 없이 직권으로 재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

라. 금고이상의 형 확정시 통·반장 위촉해제 신설 (안 제5조의2)

- 금고이상의 형 확정시 통·반장을 위촉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통·반장에 대한 주민들의 신망과 리더십 강화

마. 통·반장 위촉해제시 재위촉 제한 신설 (안 제5조의2)

- 위촉해제된 통·반장은 2년간 해당 동에서 재위촉을 제한함으로써 통·반장에 대한 주민들의 신망과 리더십 강화

바. 통·반장 임무 중 복지업무 지원 신설 (안 제6조)

- 복지사각지대 발굴, 위기가정 현장 확인, 각종 복지제도 홍보 등 소외계층에 대해 복지업무 지원

사. 반상회 개최에 대한 유연성 부여 (안 제7조)

- 매월 25일 정례 반상회의 날로 규정되어 있으나, 현실적으로 반상회

개최에 어려움이 있어 통·반 실정에 맞도록 반상회의를 개최 할 수 있도록
유연성을 부여하고자 함

아. 모범 통·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문화체험 실시 (안 제9조의 2)

-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모범 통·반장에 대하여
국내 선진지 문화체험을 실시함으로써 사기진작 도모

자. 통장활동평가의 강화 (안 제12조)

- 통장활동에 대한 평가를 연1회에서 연2회(상·하반기)로 활성화하여
통장활동 평가에 대한 실효성 확보

개정조례안 : 불임 1

신·구조문대비표 : 불임 2

관계법령발췌서 : 불임 3

-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⑤항

예산수반사항 : 불임 4

사전예고 : 의견없음

- 예고기간 : 2015. 10. 16. ~ 11. 05.(20일간)

-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기타 참고사항 : 불임 5, 6

- 안산시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계획 방침결정문
- 현행 조례

<붙임 1> 개정조례안

안산시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말단 침투와”를 “추진과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4내지 10개반으로”를 “4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”로 “10내지 50가구”를 “10세대 이상 100세대 이하”로 “부락”을 “마을”로 한다.

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해촉”을 “위촉 해제”로 한다.

③ 통·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통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, 통장 연임 시 통장활동평가를 반영하여 동장이 공개모집 없이 직권으로 재위촉할 수 있다.

제5조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의2(통·반장의 위촉 해제 및 재위촉의 제한)

①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통·반장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임기 중 사망 또는 타지역으로 전출(거주지 이전을 포함한다)하였을 때
2. 신체, 정신상의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
3.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켜 지역주민의 지탄의 대상이 될 때
4.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통장의 의무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위반한 때
5.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
6. 통·반을 통합하거나 폐치하는 때
7.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

②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따라 위촉 해제된 자는 위촉 해제일로부터 2년간 해당 동에서 통·반장에 다시 위촉될 수 없다.

제6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호(종전의 제6호)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6. 복지사각지대 발굴, 위기가정 현장 확인, 각종 복지제도 홍보 등 복지업무 지원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동장은 매월 정기적으로 통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 다만,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② 통·반장은 해당 반의 자체 실정을 고려하여 반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 다만,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9조2제1항 중 “범위 안” 을 “범위”로 하고, “세미나”를 “세미나, 문화체험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연 1회”를 “연 2회(상·하반기)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자치행정과
임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자치행정과장 여 환 규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자치행정계장 송 순 복
	담당자 성명·전화	정 남 진 (행정 3446)

<붙임 2> 신·구조문 대비표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하부의 조직) 행정 시책의 원활한 말 단 침투와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.	제2조(하부의 조직) ----- 추 진과 ----- .
제3조(확정기준) 통은 4내지 10개반으로, 반은 10내지 50가구로 구성한다. 다만, 아파트단지·자연부락 취락형태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.	제3조(확정기준) -4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, -- 10세대 이상 100세대이하----- -----마을 ----- .
제5조(통·반장의 위촉) ① · ② (생략) ③ 통·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통장은 2회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다. ④ 통장이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되거나 통이 신설되는 경우 새로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. ⑤ · ⑥ (생략)	제5조(통·반장의 위촉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통·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통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, 통장 연임시 통장활동평가를 반영하여 통장이 공개모집 없이 직권으로 재위촉할 수 있다. ④ ----- 위촉 해제 ----- ----- ----- ⑤ · ⑥ (현행과 같음)
제5조의2(통·반장의 해촉) ①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통·반장을 해촉할 수 있다. 1. 임기 중 사망 또는 타지역으로 전출(거주지 이전을 포함한다) 하였을 때 2. 신체, 정신상의 이상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3.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켜 지역주민의 지탄의 대상이 될 때 4.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통장의 의무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위반한 때 5. 통·반을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때 6. 기타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	제5조의2(통·반장의 위촉 해제 및 재위촉의 제한) ①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통·반장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질병 ----- ----- 3. · 4. (현행과 같음) 5.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6. (현행 5호와 같음) 7.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의하여 위촉 해제된 자는 위촉 해제일로부터 2년간 해당동에서 통·반장에 다시 위촉될 수 없다.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임무) 통·반장은 동장 또는 통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6조(임무) 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복지사각지대 발굴, 위기가정 현장 확인, 각종 복지제도 홍보 등 복지업무 지원</p> <p>7. 그 밖의 법령에 부여된 업무 및 규칙으로 정하는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</p>
<p>제7조(회의) ① 매월 25일은 정례 반상회의 날로 한다. 다만,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</p> <p>② 동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동 반상회의를 개최한다. 다만,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</p>	<p>제7조(회의) ① 동장은 매월 정기적으로 통장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. 다만,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</p> <p>② 통·반장은 해당 반의 자체 실정을 고려하여 반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 다만,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</p>
<p>제9조2(사기진작)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통장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연수, 세미나 또는 체육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9조2(사기진작) ----- 범위</p> <p>-----</p> <p>----- 세미나, 문화체험 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(현행 같음)</p>
<p>제12조(통장활동평가) ① 동장은 통장의 활동사항을 <u>연 1회</u> 평가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2조(통장활동평가) -----</p> <p>----- 연 2회(상·하반기)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안산시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2731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15. 12. 10.
제 안 자 : 기획행정위원장

□ 수정이유

- 공개행정 및 통장의 참여기회 확대 등을 위해 일부 조문을 삭제함.
- 통·반장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결격사유를 신설함.

□ 주요골자

- 동장이 통장을 직권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을 삭제함.
(안 제5조제3항)
- 통·반장의 결격사유를 신설함. (안 제5조의3 신설)
- 통장의 임무 중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함. (안 제6조제7호 삭제)
-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중 문화체험을 삭제함. (안 제9조의2 제1항)

안산시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제3항 중 “있으며, 통장 연임시 통장활동평가를 반영하여 동장이 공개 모집 없이 직권으로 재위촉할 수 있다.”를 “있다.”로 한다.

안 제5조의2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6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5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.

안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3(통·반장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통·반장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5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
안 제6조제7호를 삭제한다.

안 제9조의2제1항 중 “세미나, 문화체험”을 “세미나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5조(통·반장의 위촉)</p> <p>①~② (생략)</p> <p>③ 통·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통장은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④ 통장이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되거나 통이 신설되는 경우 새로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.</p>	<p>제5조(통·반장의 위촉)</p> <p>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통·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통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, 통장 연임시 통장활동평가를 반영하여 동장이 공개모집 없이 직권으로 재위촉할 수 있다.</p> <p>④ 통장이 임기 만료 전에 위촉해제되거나 통이 신설되는 경우 새로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.</p>	<p>제5조(통·반장의 위촉)</p> <p>①~② (원안과 같음)</p> <p>③ ----- 있다.</p> <p>④ (원안과 같음)</p>
<p>제5조의2(통·반장의 해촉)</p> <p>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통·반장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1. 임기 중 사망 또는 타 지역으로 전출(거주지 이전을 포함한다) 하였을 때</p> <p>2. 신체, 정신상의 이상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</p> <p>3.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</p>	<p>제5조의2(통·반장의 위촉 해제 및 재위촉의 제한)</p> <p>① (생략)</p> <p>1.~4. (생략)</p>	<p>제5조의2(통·반장의 위촉 해제 및 재위촉의 제한)</p> <p>① (원안과 같음)</p> <p>1.~4.(원안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켜 지역주민의 지탄의 대상이 될 때</p> <p>4.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통장의 의무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위반한 때</p> <p>5. 통·반을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때</p> <p>6. 기타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</p> <p><신설></p>	<p>5. <u>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</u></p> <p><u>6.~7. (생략)</u></p> <p><u>② (생략)</u></p> <p><신설></p>	<p>5.~6. (원안 제6호~제7호와 같음)</p> <p><u>② (원안과 같음)</u></p> <p><u>제5조의3(통·반장의 결격 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통·반장이 될 수 없다.</u></p> <p>1. <u>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</u></p> <p>2. <u>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u></p> <p>3. <u>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u></p> <p>4. <u>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</u></p> <p>5. <u>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</u></p>

